산업보건 주요 뉴스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